

런 內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議案番號 272號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提案理由로서는 1991年 12月 14日字 法律 第4415號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第107條, 第127條第1項, 第184條, 第234條의12, 第238條의2, 第242條 規定에 의거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益事業用 不動産에 대하여 取得稅, 登錄稅, 都市計劃稅, 共同施設稅를 課稅토록 改正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第79條第1項第26號에 따라 國家를 위하여 貢獻한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에 대하여 國家가 應分の 禮遇를 행하는 차원에서 國家有功者 等 團體設立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大韓民國傷殘軍警會, 大韓民國戰歿軍警遺族會, 大韓民國戰歿軍警未亡人會, 光復會, 4.19議舉犧牲者遺族會, 在日學徒義勇軍同志會 및 大韓武功受勳者會가 收益事業用으로 使用하는 不動産에 대하여 지방세법 第9條에 의한 許可에 갈음하여 取得稅, 登錄稅, 都市計劃稅, 共同施設稅 等 關聯 地方稅를 免除하는 條例準則이 內務部長官으로부터 示達되어서 減免條例를 制定코자 提案을 했습니다.

主要骨子は 課稅免除對象을 國家有功者團體 設立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團體로 하고, 免除稅目은 取得稅, 登錄稅, 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로 하며 事務處理는 課稅客體所在地 管轄區廳長에 委任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免除는 申請主義에 의하되 課稅免除對象임을 알 수 있을때는 區廳長에이 職權免除할 수 있도록 하고, 條例의 適用時限이 1994年 12月 31日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 報告 말씀드립니다.

追加해서 지금 報告드린 內容에 대해서 간단하게 追加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이 條例案은 92年 1月 內務部長官이 全國에 共通 許可하여 대부분 地方은 이미 1月 臨時會에서 處理되었습니다만 우리 市가 이번 2月 臨時會에서 會議가 開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會期에 通過가 되면 全國의으로 同時에 市·道에 이어서 施行이 되겠습니다.

이상 報告말씀 드립니다.

- 委員長 朴尙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 專門委員 安錫洙 都市計劃賦課地域決定同意案에 대해서 우선 檢討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

都市計劃稅는 地方稅法 第235條에 의거하여, 都市計劃事業에 필요한 비용을 承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와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目的稅로서, 1992年度 歲入豫算에 3,205千件에 144,246百萬元이 편성되어 있고, 都市計劃稅 賦課地域을 告示하는 趣旨는 도시와 농촌지역이 복합된 市·郡 등에서 과세지역 여부를 확인하는데 主안점이 있으나, 建設部 告示 第547號(1963.9.17)와 서울특별시 告示 第105號(1991.4.15)에 의거 서울 市 全地域이 이미 都市計劃稅 賦課地域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서울特別市長이 지방세법 第238條 第2項과 1991.12.30자 전문개정된 서울특별시세조례 第54條第1項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行政 管轄區域 全地域”을 都市計劃稅 賦課地域으로 결정하여 줄것을 의회에 동의요청함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檢討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의 主要內容은 公有財産을 繼續해서 2個年度 이상 占有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전년도 年間 貸付料보다 10% 以上 증가한 경우에 急增하지 않도록 下向調整하고자 하는 것으로,

地方財政法施行令 第92條第2項에 의하여 公有財産의 貸付料 또는 使用料를 計算함에 있어, 財産評定價格 算出時 土地의 경우에는 地價公示 및 土地등의 평가에 관한 法律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算出하

고, 土地외에 財産의 경우에는 隣近地의 賣買 實例와 鑑定評價額을 基準으로 算出하도록 되어 있으나, 地方財政法施行令 第92條第3項에 의하여, 耕作목적의 農耕地, 牧畜·鑛業·採石目的의 財産, 都市計劃에 저속되는 財産, 廳舍의 구내재산,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貸付料率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條例 또는 規則으로 定하도록 되어 있어 公有財産을 計算해서 2個年度 이상 占有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前年度 年間貸付料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下向調整하고자 하는 것으로,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案은 法的 瑕疵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新規로 占有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대부분로 하향조정 대상에 해당이 되지않아 기존의 2個年度 이상 占有, 사용·수익자와의 貸付料 격차가 많이 나므로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思料됩니다.

다음 서울特別市 國家有功者團體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案에 대한 檢討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 國家有功者團體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안은 地方稅法施行令 第79條第1項第26號에 의하여 國家有功者團體는 非課稅對象인 非營利事業者로 되어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不動產에 대하여는 取得稅·登錄稅·都市計劃稅·소방공동시설세가 면제되는 반면 1991년 12월 14일자 법률 第4415號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第107條, 第127條第1項, 第184條, 第234의 12, 第238條, 第242條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課稅免除을 排除하고 있어 國家有功者團體 存立을 위한 建物賃貸事業 및 기타수익사업용 不動產도 모두 課稅對象에 該當되므로 國家有功者團體設立에관한法律에 의해 설립된 團體에 대하여 별도 稅制支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地方稅法 第7條第1項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課稅를 不適當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課稅하지 아니할

수 있고 地方稅法 第9條 規定에 의거 國家有功者團體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을 위한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얻었으므로 法的 瑕疵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地方稅法 중 改正法律 第107條, 第127條第1項, 第184條, 第234條의12, 第238條, 第242條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익사업용 不動產에는 課稅免除을 排除하고 있으므로 團體의 存立과 無關하거나 또는 과도한 建物賃貸事業이나 수익사업용 不動產에 대하여는 稅制支援을 漸進的으로 縮小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質疑하실 委員이 있으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明鎭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明鎭委員 質疑에 앞서서 財務局長님의 報告提案說明 中에 앞으로 좀 止揚해야 될 部分이 있기에 먼저 指摘하고자 합니다. 地方自治의 根本精神은 各 地方의 모든 일은 그 地域 自體에서 決定하는 것이 精神이고 原則입니다. 다른 地域의 地方自治議會에서 通過됐고, 施行 中이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에 따라야 된다 그런 論理는 地方自治精神에 正面으로 違背되는, 반드시 是正되어야 되고, 改善되어야 될 事項임을 指摘을 합니다. 그 部分이 提案說明과 報告事項 中에 여러번 強調되었기에 指摘하면서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都市計劃稅와 共同施設稅 이것은 몇 月달에 賦課되는 稅目입니까?

○財務局長 裴文煥 6월에 財産稅가 나갑니다, 그때 같이 따라서 나갑니다.

○崔明鎭委員 그렇지요.

○財務局長 裴文煥 그리고 또 10月달에 綜合土地稅가 나가는데 그때 같이 따라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崔明鎭委員 6月の 財産稅는 建物分이지요?